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7일 16시 41분



목차

| | |
|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등록현황 | 3 |
| 급수공사의 승인 | 3 |

급수공사의 승인

2014.04.17 조회수 540 등록자 박종일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관리번호 |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01 |
| 담당부서 | 수도행정과 |
| 상위법령 | 수도법 제38조 |
| 조례 |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|
| 유형 | 1호 - 승인(승락) |
| 법령공표일 | 누락규제 |
| 존속기한 | 1998-04-04 |
| 규제시행/폐지일 | 1998-04-04 |

규제내용 제6조(급수공사의 승인)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 한 건물에 여러 개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, 또는 한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3. 1. 10)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공사비와 함께 납 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. ④시장이 급수장치의 신설, 개조, 특수가압시설,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제출케 할 수 있다.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00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02 >

Yeosu Web Contents

